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 - 256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㈜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에 따라 사모단독펀드 해산 회피 목적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 이용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㈜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

○ **(수정의결)**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㈜의 사모단독펀드 해산 회피 목적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 이용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동기를 “상”에서 “중”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50%감경*한 10백만으로 의결

* 위반동기에 있어 펀드 설정 당시 시장상황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하면서 위반이 발생한 점, 펀드 설정 이전에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‘중’으로 판단하고 「자본시장법」 시행령 [별표22]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50% 감경

3. 조치이유

가. 사모단독펀드 해산 회피 목적으로 다른 집합투자지구 이용 금지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의 총수가 1인인 투자회사의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,

○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㈜는 20xx.xx.xx. ㈎펀드를 설립하면서,

○ 동 회사형 펀드의 주주가 1인이 되어 해산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,

사실상 하나*의 재간접 펀드를 2개(㉮펀드, ㉯펀드)로 분할·설정함으로써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

* 설정일, 투자자(A, B), 투자대상 및 운용역이 모두 동일한 사실상 하나의 펀드
** B는 A의 자회사

4. 근거법규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8호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항 제8의5호